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구 분		문 의 처	부 서 명
지 식 재 산 평가지원사업	IP담보대출	02-3459-2922/2925	지식재산 평가지원실 (지식재산금융센터)
	I P 보 증	02-3459-2944	
	I P 투 자	02-3459-2923/2942	
	I P 사 업 화	02-3459-2935	
표 본 조 사		02-3459-2934	지식재산 평가품질관리실
타당성조사		02-3459-2908	
평가기법 개발		02-3459-2709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S)		02-3459-2805	지식재산 평가정보실
평가정보체계 (IP-Hub)		02-3459-2895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혁신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견인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Management Center

www.kipa.org
www.iphub.or.kr
smart.kip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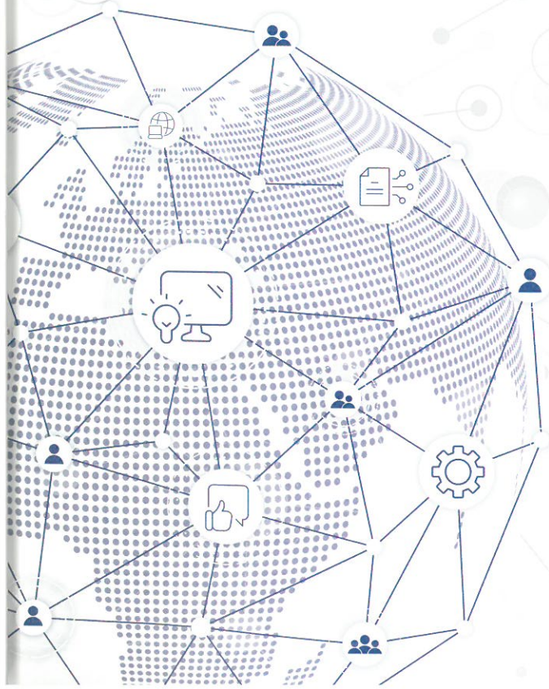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의 가치는
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CONTENTS

1.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소개 02

2. 사업소개 06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06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11

표본조사 12

타당성조사 13

평가기법 개발 14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15

평가정보체계(IP-Hub) 16

3. 부록 17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17

사업 FAQ 18

1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소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발명진흥법 제31조6에 의거하여 설립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평가지원, 표본조사, 타당성조사, 평가정보체계,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특허청 지정 법정 기관입니다.

주요사업

IP평가지원 사업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표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평가기법개발 및 보급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5)
IP평가정보체계 운영 (IP-Hub)
AI가치평가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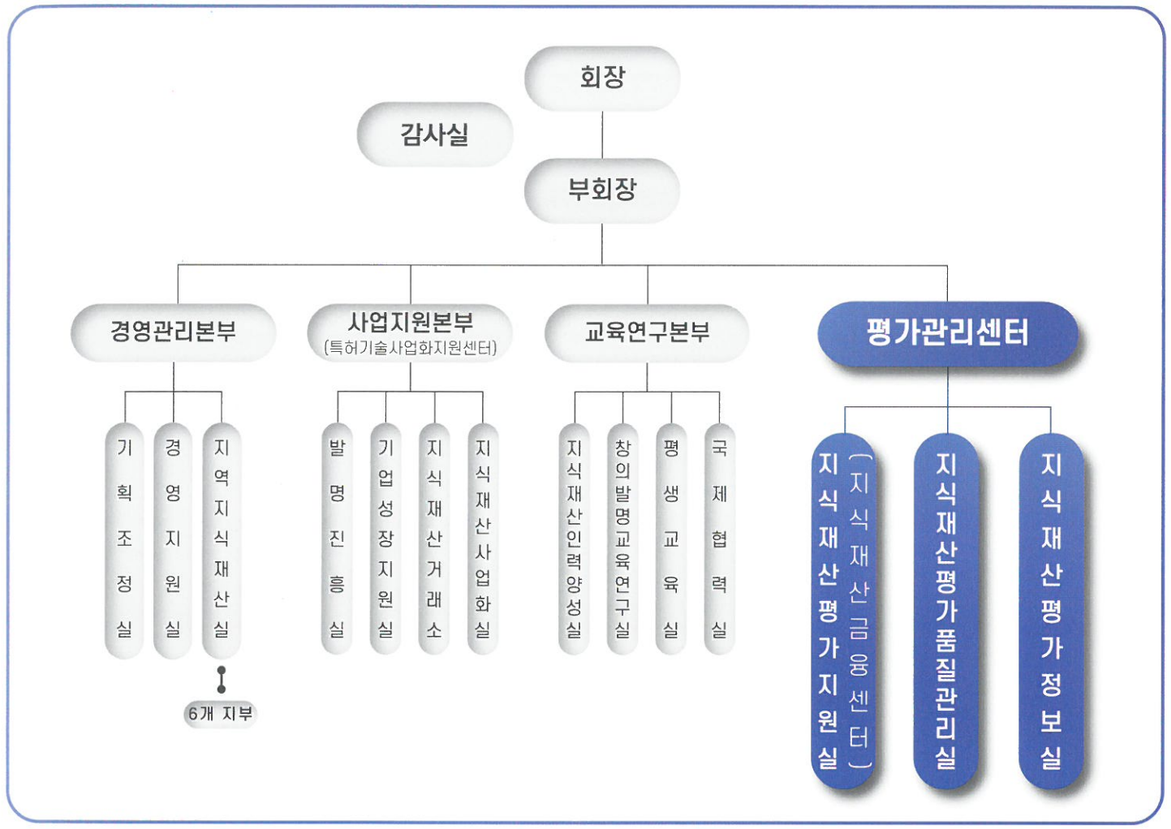
회장
감사실
부회장
경영관리본부
사업지원본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
교육연구본부
평가관리센터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지역지식재산실
6개 지부
발명진흥실
기업성장지원실
지식재산거래소
지식재산사업화실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창의발명교육연구실
평생교육실
국제협력실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지식재산금융센터)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지식재산평가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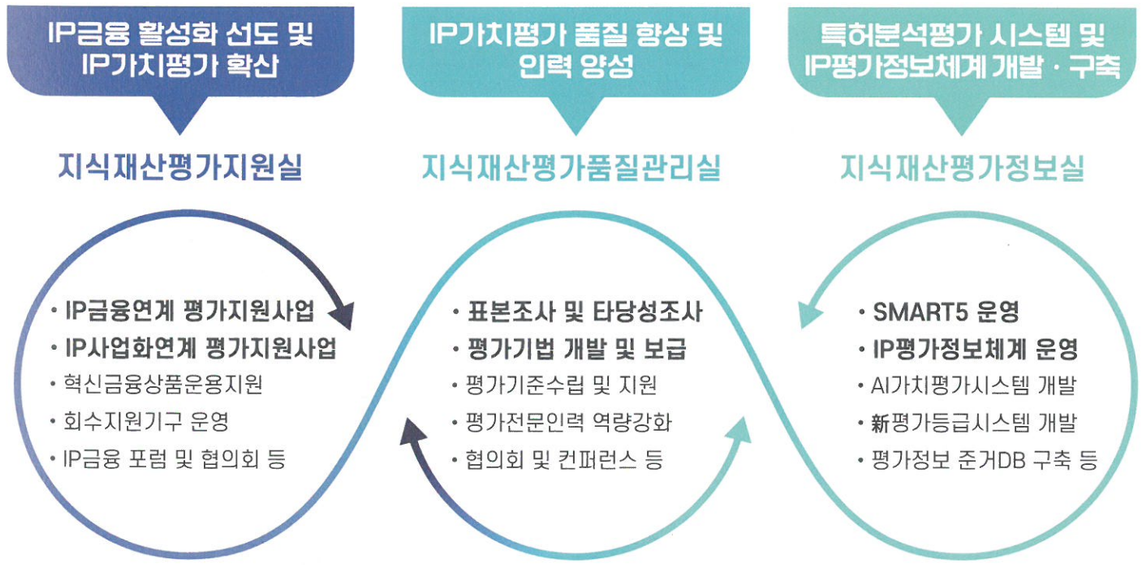
IP금융 활성화 선도 및 IP가치평가 확산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IP금융연계 평가지원사업
• IP사업화연계 평가지원사업
• 혁신금융상품운용지원
• 회수지원기구 운영
• IP금융 포럼 및 협의회 등
IP가치평가 품질 향상 및 인력 양성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 표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 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
• 평가기준수립 및 지원
• 평가전문인력 역량강화
• 협의회 및 컨퍼런스 등
특허분석평가 시스템 및 IP평가정보체계 개발 · 구축
지식재산평가정보실
• SMART5 운영
• IP평가정보체계 운영
• AI가치평가시스템 개발
• 新평가등급시스템 개발
• 평가정보 준거DB 구축 등

② 사업 소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금융연계

IP담보대출

활용 방법

우수한 지식재산(등록 특허)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협약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얻는 가치로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원 내용

특허청 협약은행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지식재산평가비용의 50% 지원

*일부는 특허청이 지원, 일부는 은행이 지원(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

신청 절차

STEP 1

협약은행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 IP담보대출 상품 상담·예비평가

STEP 2

협약은행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경우, 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 진행 시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

협약은행별 IP담보대출 상품명

KDB산업은행 1588-1500	IP담보대출	NH농협은행 1661-3000	NH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한은행 1577-8008	신한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우리은행 1588-5000	우리 CUBE론-IP
하나은행 1599-1111	하나IP담보대출	IBK기업은행 1588-2588	IP사업화자금대출
KB국민은행 1800-9500	KB더드림 IP담보대출	DGB대구은행 1566-5050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
BNK부산은행 1544-6200	IP담보대출	BNK경남은행 1600-8585	BNK Active IP담보대출

*대출가능 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상품운영에 관한 내용은 은행별 내부 규정에 따르며, 세부 내용은 은행 각 지점으로 문의

*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또는 평가정보체계(www.iphub.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보증

활용 방법

우수한 지식재산(등록특허)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협약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평가 보증상품을 활용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으로부터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지식재산평가비용의 60% 지원

*일부는 특허청이 지원, 일부는 보증기금(은행)이 지원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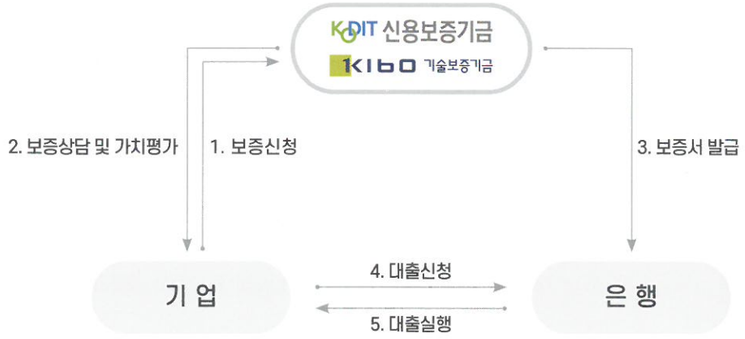

협약기관별 IP평가보증 상품명

KODIT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지식재산가치 평가보증
KIBO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식재산(IP) 평가보증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는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기금의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

*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또는 평가정보체계(www.iphub.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금융연계

IP투자

활용 방법

우수한 지식재산(등록 특허)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기술사업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실사, 분석 및 평가 내용을 투자 유치에 활용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원 내용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산출한 지식재산평가비용의 80% 지원(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구분	평가비용	국고지원액	지원한도	비고
가치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우대 10%)	1,200만원	평가비용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750만원 (VAT 별도)		600만원	

우대 지원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 10%까지 추가 우대

- 우대조건 : 2030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자세한 우대지원 조건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예산 범위내로 한하며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절차

투자기관과의 투자상담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평가상담 후, 사업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ipv_too@kipa.org)로 신청하며, 투자결정은 투자기관의 투자심의 결과에 따름

유의 사항

· 신청인은 자기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투자기관을 매칭하거나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논의 중인 투자기관이 없는 경우 유관 기관(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등)들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중도 포기 등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제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또는 평가정보체계(www.iphub.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A사 (IP담보대출)

▶ **기업개요**

- 금속 소재를 가공하여 가전, 의료기기 등의 외관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금속 표면처리 관련 사업 확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홍보 자금이 필요하던 중 '22년도에 IP담보대출연계 IP평가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 받아 운영자금 확보

▶ **후속성과**

- '21년 대비 '22년도 영업이익 약 90% 증가

B사 (IP보증)

▶ **기업개요**

- 반도체 장비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당초 예상보다 신축 공장 가동 지연 및 신제품 테스트 기간 장기화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졌으나, '22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보증기금을 통해 2.6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 **후속성과**

- 신축공장 마련 및 설비 투자로 우수한 세라믹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됨

C사 (IP투자)

▶ **기업개요**

- AI연산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

▶ **지원내용**

- '21년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가치평가형 평가보고서를 활용(1200만원 지원)하여 B투자기관 등에서140억원(Series A) 투자유치

▶ **후속성과**

- '21년 800억원 규모 Series B 투자 유치
- '22년 C대기업과 '컴퓨터비전-메타버스-하이퍼스케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사업화연계

IP사업화

활용 방법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 분석, 비교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지식재산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사업 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인 중소기업*또는 개인(내국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지원 내용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5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 *평가비용 : 특허청장이 지정, 고시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 상의 금액
우대 지원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 10%까지 추가 우대 - 우대조건 : 2030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자세한 우대지원 조건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예산 범위내로 한하며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절차	STEP 1 신청인↔평가기관 → STEP 2 온라인 신청(신청인) → STEP 3 선정심사 → STEP 4 최종 선정 → 계약체결 → STEP 5 신청인↔평가기관 → 평가수행 → STEP 6 평가기관 → 평가비용지원 → STEP 7 평가기관 사전상담 → 신청/접수 → 심의
유의 사항	· 사업신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최종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의 대표이나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신청인은 견적서상 평가비용 중 자기부담금과 총 평가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 평가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또는 평가정보체계(www.iphub.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 활용사업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사업내용

IP담보대출에서 채무불이행 발생 시, 은행이 처분가능하게 된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에서 매입하고, 매입한 IP의 수익화를 추진합니다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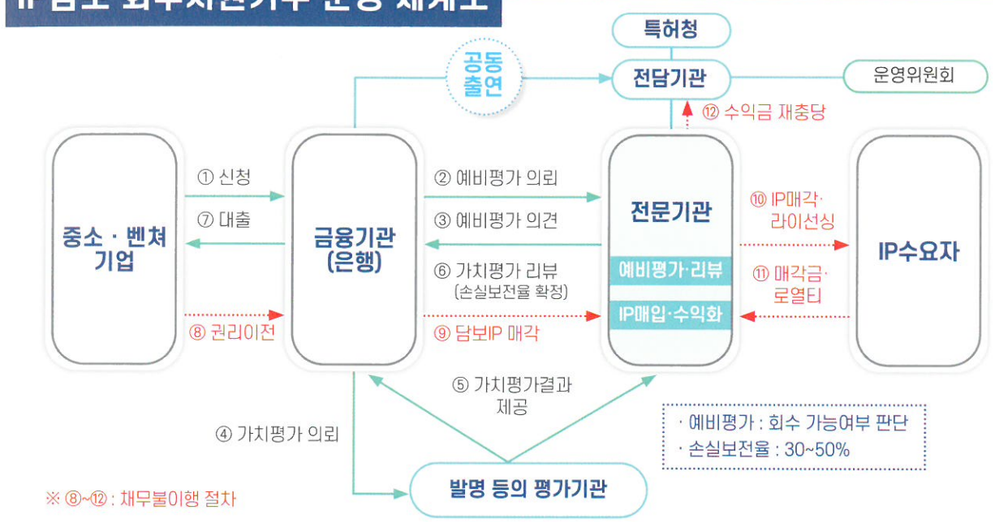

협약은행 : 총 12곳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참여시기	출연 은행
'20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총 7곳
'21년~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총 5곳

표본조사

법 적 근 거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목 적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를 무작위 및 우선추출방식으로 일정 비율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점검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합니다.
표본조사 절차	

계획 수립

▶ 조사계획 수립 및 보고
- 표본조사 추진방향 및 표본설계 방향
- 수행체계 및 조사일정
- 표본조사결과의 활용계획

▶ 표본설계
- 모집단 확정 및 표본추출틀 구축
- 모집단 분석 및 층화변수 결정
-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

표본추출 및 수집

▶ 표본추출
- 무작위추출 및 우선추출

▶ 조사 대상 평가 결과서 수집

▼

표본 조사

▶ 조사책임자,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반 운영

▶ 평가 결과서 품질 판단 및 점검

▶ 내부 점검 건에 대한 외부 심의위원회 운영

▼

환류 및 활용

▶ 결과 분석 및 환류
- 발명 등의 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결과 안내 및 평가품질제고

타당성조사

법 적 근 거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목 적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가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허청장, 국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합니다.
타당성조사 절차	

접수

▶ 타당성조사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회부기준검토

▶ 타당성조사 회부 여부 판단
- 회부기준 검토
- 타당성조사 중지 또는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종료 해당하지 않으면 타당성조사 착수

▼

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계획 수립, 조사반 구성
- 착수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송
- 기초자료검토
- 현장조사, 질문조사
- 검토보고서 작성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운영
- 검토보고서 적정성 심의

평가기법 개발

법 적 근 거

발명진흥법 제31조의3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목 적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평가기법 개발 내 용

▶ 평가대상의 특수성 및 제반환경을 고려한 평가기법 연구 및 개발
▶ 평가목적별 지식재산·기술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모델 개발

<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평가대상 확대 >

기존		발명진흥법 개정 이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중인 특허, 영업비밀, 배치설계
발명		발명 등

지 식 재 산 가 치 평 가 가 이 드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개정
▶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가이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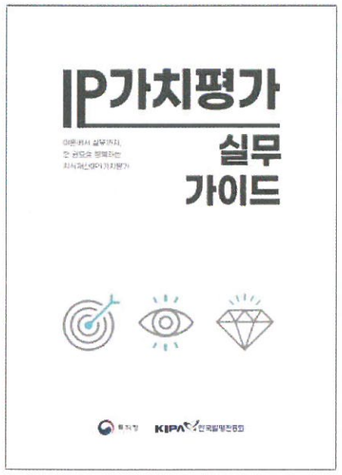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평가방법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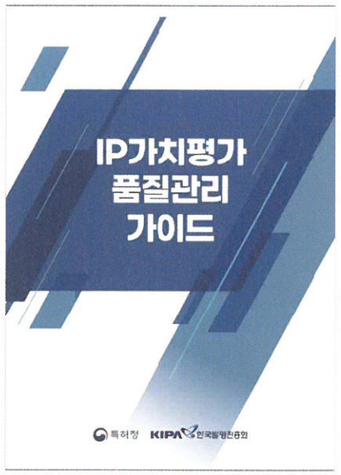

평가 결과서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서비스 개요

SMART5란 무엇인가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한 평가 모델을 통해, 특허번호 입력으로 손쉽게 평가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특허 등급평가시스템입니다.

이용 절차

SMART5 홈페이지(smart.kipa.org)에서 회원가입, 이용신청 및 결제(건별·연간 신청)한 뒤 특허번호 입력을 통해 즉시 평가 및 조회가 가능

*특허 등록 결정 후 DB 반영 시간 (2~3개월) 소요

평가 대상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등록 특허이며,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평가 점수와 평가 등급(AAA~C, 9등급)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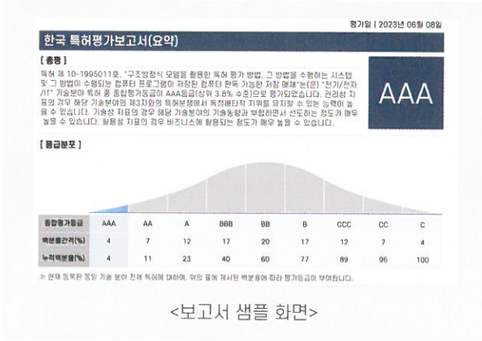

<보고서 샘플 화면>

활용 사례

보유특허 관리

· 연차료 절감을 위해 보유특허 포기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한 번에 최대 500건까지 평가가능하므로 시간&비용절감

IP금융

지식재산우대보증 SMART5 등급과 연계한 보증상품 ▶ KODIT 신용보증기금 SMART5 B등급 이상

국가 R&D 성과평가

국가 R&D 성과평가의 표준성과지표 : 기술적 성과 中

기술이전

SMART5의 유사특허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잠재수요기업 발굴

01 우수특허 선별
SMART5를 활용해 우수특허 선별

02 유사특허 분석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 분석

03 유사특허 보유기업 현황

평가정보체계(IP-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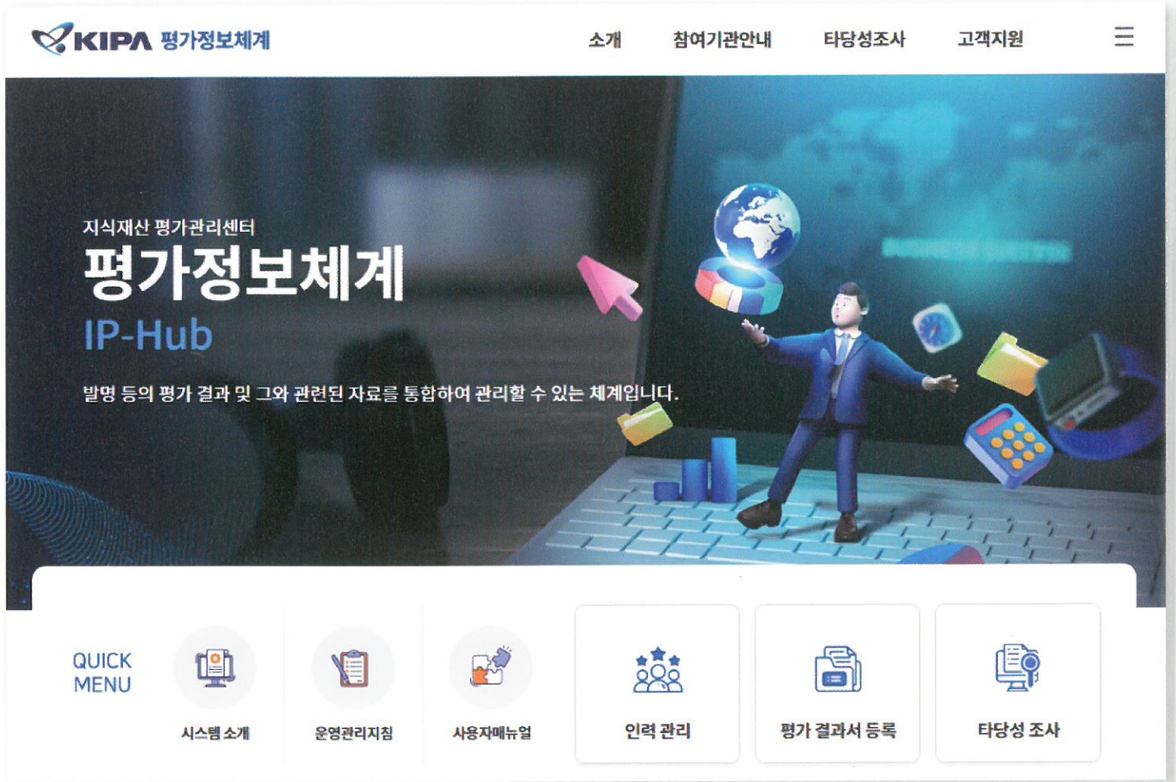

평가정보체계란?
(IP-Hub)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근거 : 발명진흥법 제31조의5

평가 인력 및 평가 결과서 등록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평가정보 환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투입된 인력 및 평가 정보 관리	IP금융연계(IP담보, IP보증, IP투자) 및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평가 결과서를 분석 · 가공하여 가치평가용 핵심변수의 준거 정보 제공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23)

평가정보 · 특허법인

- dun&bradstreet — nicednb.com — 02-2122-1340
- NICE평가정보 — biz.nicetcb.co.kr — 02-2124-6822
- WIPS — wipscorp.com — 02-3153-7928
- YOU ME PATENT & LAW FIRM — kr.youme.com — 02-3458-0716
- 이크레더블 — ecredible.co.kr — 02-2101-9243
- 주원아이피 — joowonpat.com — 02-6953-1716
- KTG — iktg.com — 042-335-1946
- 특허법인다나 — danapat.com — 02-6957-9931
- DARAE Law & IP Group — daraelaw.co.kr — 02-3457-7871
- 특허법인도담 — dodamip.com — 031-605-4134
- KODATA — kodata.co.kr — 02-3215-2384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sti.re.kr — 02-3299-6023
- KO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koat.or.kr — 063-919-1343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 kbstar.com — 02-2073-0311
- 농협 — nonghyup.com — 02-2080-2757
- 우리은행 — wooribank.com — 02-2022-3206
- KDB산업은행 — kdb.or.kr — 02-787-6166
- KIBO 기술보증기금 — kibo.or.kr — 02-2155-3774
- KODIT 신용보증기금 — kodit.co.kr — 053-430-4378

시험연구원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 kcl.re.kr — 02-3415-8854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te.re.kr — 031-428-7575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tr.or.kr — 02-2164-0167

'23년 10월 1일 기준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별 문의처는 당해 연도 공고문 및 홈페이지(www.kipa.org/www.iphub.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FAQ

지식재산 평가지원

Q |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의 경우, (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최초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내이며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 지원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추가 증빙자료가 있나요?

A | 위의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2개 사항이 모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 시 특례 대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여 발급하고, 이미 당해 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85)로 문의해야 합니다.

Q | 사업화, 보증, 투자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평가에 대하여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동일 권리에 대한 평가는 동일 사업연도에 사업화, 금융(보증·투자·담보) 각 1회씩 모두 가능하나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 지식재산가치 평가 결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 지식재산평가의 경우, 평가 시 설정한 활용 목적에 따라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요소 및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 제출서류 중 특허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

A | 등록원부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 권리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 | 국고지원금은 신청 기업에게 지급되나요?

A | 국고지원금은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수령 권리를 평가기관에 양도**하여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표본조사·타당성조사·품질점검

Q | 지식재산평가 표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A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결과서를 대상으로 품질점검 및 환류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Q | 타당성조사는 아무나 요청하면 착수하나요?

A | 타당성조사는 특허청장, 국가 및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회부기준을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중지 또는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에 착수하게 됩니다.

Q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제출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정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A | 평가기관이 1년 이내에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3회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 4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 됩니다.

Q |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보고서는 평가결과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가요?

A |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가치평가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시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 내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세부평가방법과 평가요소가 실무가이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발행한 평가결과서는 발명 등의 평가결과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평가결과서의 품질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표본조사(발명진흥법 제31조의4) 수행 시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기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 조성을 위해 실무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정·배포하고 있습니다.

Q | 무작위추출방식과 우선추출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무작위추출방식은 조사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확률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선추출방식은 특정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비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평가결과서의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분야,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FAQ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5)

Q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① smart.kipa.org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이용요금 결제
③ 검색창에 등록/출원번호 입력
④ 평가버튼 클릭
⑤ 평가보고서 조회

※ 특허 등록 후 2~3개월 후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정보체계(IP-Hub)

Q |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건 외에 수행한 평가 결과서도 등록해야 하나요?

A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서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수행 유무와 무관하게 발명 등을 평가하여 발급한 평가 결과서는 모두 평가정보체계에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를 등록해야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평가 결과서에 명시된 **평가 결과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에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관리센터 또는 특허청의 평가 결과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정보체계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를 등록해야 합니다.